

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2. 1.

개정 2024. 2. 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장 시설 대관

제2조(대관 시설) 대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소모임 활동을 위한 8석 규모의 **동아리실1(17.12㎡)**
2. 소모임 활동을 위한 10석 규모의 **동아리실2(25.23㎡)**
3. **강연, 교육 등을 위한 30석 규모의 세미나실(75.65㎡)**
4. **신체활동 및 소규모 음악활동을 위한 10명 활동 규모의 마루실(104.76㎡)**
5. **강연, 발표회, 공연 등을 위한 100석 규모의 다목적실(258.38㎡)**
6. **작품 전시를 위한 어울림 전시홀(76.38㎡)**

제3조(대관 시간) 대관 시간은 회당 **3시간 혹은 전일이며**,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오전 : 09:30~12:30
2. 오후 : 14:00~17:00
3. **전일 : 09:00~18:00**

제4조(대관 신청) ① 대관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, 센터장의 검토 및 승인, 사용료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.

② 대관 신청은 **분기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**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③ 대관 신청은 참여인원 **2인 이상일** 때 가능하다.

④ 모든 시설은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회차별 월 4회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정기대관) ① 일반 대관 신청은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두 번째 화요일부터 5일간 **분기별** 사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.

② 동아리 대관 신청은 동아리 활동 연간계획에 따라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5일간 **분기별** 사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.

③ 어울림 전시홀은 매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.

제6조(수시대관) 분기별 대관 신청 기간 이후 대관 신청이 없는 날의 경우 운영일 기준 이용 2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 납부) 사용료는 대관신청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용자의 의무) ① 시설 이용자는 ‘선량한 이용자의 의무’ 를 준수하며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센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, 이용자의 소지물이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가 제한될 수 있다.

제3장 생활문화 동아리

제9조(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등) ①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동아리를 등록하여 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동아리 등록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.

③ 등록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대관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대관신청 절차와 사용료 등은 일반대관과 같다.

④ 센터는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(재능나눔 프로그램, 발표, 전시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4장 생활문화 프로그램

제10조(프로그램 운영) 센터는 시민들의 취향을 발굴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과 내용, 주기를 달리하여 기획하며,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강사별 강의시간은 월 최대 2개 프로그램(4시간) 이내로 제한한다.

제11조(프로그램 참여) 센터가 기획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개강일 포함 2회 연속 결석 시 신청 대기자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.

제12조(강사수당) 강사수당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「김해시 당초예산 기준경비」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.

부칙

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